

의안번호	제666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420회)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지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8월 23일

#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6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23일  
발의자 : 박지현,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이동우, 이상정,  
유재목

## 1. 제안이유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사업대상자인 도내 65세 이상인 자, 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까지 추가하여 도내 보건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발굴하고 저출산 위기의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유효성을 증대시켜 더 많은 도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확대(안 제5조)
  - (현행)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변경)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 3. 조례안 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라.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용자지원 신청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5.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5조(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다자녀가구(2자녀 이상)</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810,760명
  - \* 65세 이상 노인(330,884), 기초생활수급자(47,061), 차상위계층(25,782), 국가유공자(6,634), 장애인(45,562), (2자녀 이상)다자녀가구(354,837)
- 대상수술 : 14개 수술(시술)
  -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척추, 치아교정, 암 질환, 소화기(담낭·간·위·맹장)질환, 호흡기질환, 산부인과질환, 골절질환, 비뇨기질환, 안과 질환
- 의료기관 : 242개소
- 재원규모 : 125억원(농협 정책자금, 25억×5년) \* 道 채무보증
- 도비소요액 : 25억원
- 대출한도 : 1인 50~300만원 / 3년간 무이자 상환
- 사업량 : 연 830명<sup>최소</sup> ~ 5,000명<sup>최대</sup>
- 사업내용 :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지원

## 2. 비용 발생 요인

- 지원 대상자의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
- 금융기관 대출자금 미상환금에 대한 보전비

## 3. 관련조문

- 안 제6조(지원내용) 및 제11조(채무보증)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준 : '23~'24년 현재 예산 및 연체 현황 기초
- 추계기간 : 향후 5년(2024년 ~ 2028년)

## 나. 추계 결과

### ○ 산출금액

- (세입) 14백만원 ※ '23~'24년 발생 미상환금

- (세출) 2,444백만원 [미상환금 등 1,280 / 이차보전금 1,164]

### ○ 산출과정 = ('24) 388백만원 [(미상환금<sup>①</sup>+ 연체이자<sup>②</sup>) + 이차보전금<sup>③</sup>]

① 미상환금 보전 : 250,000천원(미상환율 10%)

② 연체이자 등 보전 : 6,870천원(지연이자+연체이자)

③ 이차보전금 : 132,500천원(이율 5.3%)

### ○ 재원조달 방법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b>세 입</b>	<b>14</b>	<b>2</b>	<b>3</b>	<b>3</b>	<b>3</b>	<b>3</b>
미상환금 환수	14	2	3	3	3	3
<b>세 출</b>	<b>2,444</b>	<b>388</b>	<b>478</b>	<b>526</b>	<b>526</b>	<b>526</b>
의료비 미상환금 지원	1,280	256	256	256	256	256
의료비 이차보전금	1,164	132	222	270	270	270

※ 상환기간(3년)에 따른 이차보전금 누계 반영